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4.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안 제3조의2)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를 설치하고,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신탁계약 체결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나. 가맹점의 등록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 가맹점 등록 시,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안 제7조의2)

- 가맹점 등록 취소를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재등록 기간 신설

라.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안 제9조)

- 지역화폐 잔액 환급 기준을 “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emonnala@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4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내 금융기관에” 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를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지역화폐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업종으로서” 를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등록 제한업종” 을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법 제10조제2호” 를 “법 제10조제2항” 으로 하고,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을 “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 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⑧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지역화폐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현금 또는 체크카드” 를 “현금 또는 카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카드판매 수수료” 를 “판매 수수료” 로 한다.

별 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역 화폐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② ----- -----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p> <p>④ -----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지역화폐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p> <p>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1 ~ 4. (생략)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으로 이동>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생략)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같은조 제3항으로 이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 ④ (생략)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신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

-----.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지역화폐의 판매·보관·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지역화폐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원으로 한다. 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역화폐 정산한도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 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3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9.]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5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2.4.28>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4.2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5.20, 2022.4.28>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2022.4.28>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제목개정 2022.4.28]